



[2015.4.2.] [1154 , 2015.4.2.,]

() 043 - 719 - 3403

1 ()

「 」

2 (

) 「 」 (" ") 2 2

"

" . < 2013.3.23.>

1.

가

가

2.

가

3.

가

4.

가

5.

가

3 (

) 3 1

(" ")

1.

2.

3.

1

1

(

)

(

)

1.

(

)가

3

2

1

3

2

1

2.

가

3

2

3

3.

2

「

」

36

1

(

)

2

,

2

(

"

"

)

.< 2014.9.24.>

1.

2.

(

)

3.

(

)

4.

5.

4 (

)

3

1

(

"

"

)

1.

2. .

3. .

4. () .

1 () 3 (1 2)

1. ()가 3 2 1

3 2 1

2. 가 3 2 3

3. 3 4

4. 3 5 (" ")

2 「 」 36 1

() .

2

, 4 (" ")

.< [2014.9.24.](#)>

- 1.
- 2.
- 3.
- 4.
- 5.
- 6.

5 () 3 1 가

. < [2014.9.24.](#)>

1. 가. ()

. ()

. ()

2. 가. ()

. ()

. ()

. ()

5 1 가 30

() 6

()

()

.< 2014.9.24.>

1. 가. 3 2 1 4 2 1
 . 3 2 2 4 2 2
 .
 . 「가」 15 1 1 가
 () : 3 2 3
3. : 4 2 4 (4 1 4 가)
4. 가. 3 1 3 가 1 2
 1 2 가 : 3 2 3
 . 4 1 4 가 1 , 2 3
 1 , 2 3 가 : 4 2 3 4
 1 2
 「」 36 1 ()
) . 2 3

- 6 () 3 3 가 .
1. 가. .
 . 가 가 가
 2. .
 3. .
 4. 1 3 3

.< 2013.3.23., 2014.8.20.>

1. 가
2. . 1
 3 4
 가. 「」 2
 . 1 3
 . 「 . .」 6 . (" .
 ")
 . 「」 67
 . ,
 가 .

7 () 3 4 1 ,
2 .

8 () 3 4 (4 1 4
)가 . < 2013.12.6.,
2014.9.24.>

1. 「 」 「 」
2. 「 」 2 (4 . " "
-) (.)
- (" ")

3. 「 」 2 4 (" ") ()
1

4. 2
5. <2014.9.24.>
6. <2014.9.24.>

1. 1
2. 2
3. (入庫) .

()가 1
2
3 4 .< 2013.12.6.>

9 () 4 1 (10
) (7
)
가 .

1 4 , ,
5 .< 2013.3.23., 2013.12.6.>

1. (起源)
2. 가.
 . 1
 . (眼)
 . (感作性試驗)
 . (光毒性)
 . (貼布試驗)
3. 가.

4. 가 A ()

5. [(檢體)]

1 4 1

1 1

1 8 () 가

.< 2013.3.23.>

1.

2. 가 1 3 .< 2013.3.23.>

1. (配合意義)가

2. 2 2

3. 가

가 1 4

, 9 .< 2013.3.23.>

1.

2. ()

3.

4. 1 4 .< 2013.3.23., 2013.12.6.>

10 () 4 1 가 .< 2013.3.23., 2013.12.6.>

1. 가 , , ,

2. [가 (가)] (對照群)(가)

2 1 3

가 가 ()

(2 4 5 20

(pH)

(劑形)[2 1 3 (液劑)

]

1 () 가 10 .

< 2013.3.23.>

2 가 1 .< 2013.3.23.>

- 1.
- 2. ()
- 3.
- 4. .

11 () 5 1 가 (4 1 4 1 , 2 , 4 가 . . . 10) .

< 2013.3.23., 2013.12.6., 2015.4.2.>

- 1. 1
- 2. 2
- 3. ()
- 4. .

가.

.
. ,
.

. , 「 」 12 2 가 , 6 2 2 가 , 가

.
. (.)
.
.
. ,

5. . , 가 6 2 2 가

6. 6 2 2 가 . ,

7. 5 4 1 3 가 , 12 2 .

8. 7 4 1 3 가 , 가

8 2. 7

12 2

7

5

9. 4 1 3

「

」

·

,

10.

「

」

·

,

(

)

11.

0.5

1

가.

(A)

(

C)

(E)

12 (

)

5

2

가

1. 1

·

2.

·

·

(

)

·

3.

(危害)가

,

4.

·

5.

가

가

,

6. 2

·

,

가.

가

가

·

·

·

7.

8.

가

·

1

.< 2013.3.23.>

2

.< 2014.9.24.>

1.

2.

3.

·

·

13 () 5 3

2 . <

[2013.3.23.>](#)

1 「 」
1

14 () 5 4

- 1. 15
- 2. 19
- 3. 11
- 4. 12 1

1 가 , , , ,

2

3

5 4 (" ")
17

11 30
6
6

4 , 8

1 31

2

1 10

[[2015.1.6.](#)]

15 () 6 가

20 ()
) 11 ()

16 (가) 7 「
」 (. " ") 가
가

12 ()

() . < [2013.3.23.>](#)

2. 가 .
10 1 3 . <

[2013.3.23.>](#)

1.
2. , 가

3. 10 50 10 50

가.

.
. .
. .
. .

(AHA)

. 가

10 1 9 . 3 .
10 1 10 . <

[2013.3.23.>](#)

1.
2. . , .
3. ()
4. .
5. .
6. (「 」) ,
1 2 3 .

1. 가 10 1 3

2. 10 1 3
10 4 4 .

20 (가) 11 1 (" ")
) 가 가 ,
. < [2013.3.23.>](#)

21 (.) 12 . 가

1. . , ,
2. .

22 (.) 13 2 .
5 .

23 () 14 1 5
1 가 . <

[2013.3.23.>](#)

14 3 , 가

1. :
2. : , ,
3. :

14 3 , 가

.< [2013.3.23.>](#)

가.

. , ,
.
.

1 3 .

.< [2013.3.23.>](#)

24 () 18 1 (")
")

1. 「 」 2 ()
 2. . . () 14 . .
- 18 4 14 .

25 () 18 2 15

26 () 18 3 17
, . , .<

[2013.3.23.>](#)

27 <[2014.8.20.>](#)

28 <[2014.8.20.>](#)

29 () 24 1 7 .
<[2014.8.20.>](#)

30 () 「 」 12 1 「
」 . 「

31 () 31 .
(" ") 18 19
()
가 . < 2013.3.23.>

- 1.
- 2.

3
(,)
< 2013.3.23.>

32 () 32

9

33 ()

3

(3)

- 1. 3 : 2014 1 1
- 2. 4 : 2014 1 1
- 3. 5 : 2014 1 1

[2014.4.1.]

< 110 ,2012.2.24.>

1 () . , 6 2 2 , 27 , 28 , 29 2 ,

6 8 2012 8 5 .

2 () 19

3 () (2013 2) 4

4 . 3 1 .

4 2013 2 4

4 ()

9 10

5 () 2011 . 13

6 (가)

가 가

16 가 .

7 () 24

8 () 7

9 ()

10 () 「 」

가

< 1010 ,2013.3.23.>

1 ()

2 4

5 ()

2 " " " .

6 2 2 , 11 7 , 8 , 10 , 12 2 , 13

1 , 14 2 · 3 · 5 · 6 · 8 · 9 , 16 1 , 2 , 17

2 , 3 , 19 2 3 , 23 1 , 3 , 4 ,

26 , 27 2 , 8 , 3 , 4 , 28

5 31 3 " " " " .

9 1 · , 3 , 4 ,

5 , 6 , 10 1 , 1 , 2 , 3

31 1 " " " 가 "

18 2 " " " " .

19 4 1 20 " " " " .

2 4 , 3 2 12), 4 3 , 6 1 가 2),

2 7 2. 3) · 4) · 5) " " " " .

7 , 8 , 9 , 10

19 " " " 가 "

7 , 8 19 "

" " 가 " .

12 , 16 , (

) 8 17 " " "

" .

4 2 가 16 " " " " .

< 1046 ,2013.12.6.>

< 1074 ,2014.4.1.>

< 1088 ,2014.8.20.>

1 () .

2 9

10 ()

6 2 2 .

「 . . 」 6 . (" .

")

27 28 .

29 2 .

1 3 5) " " " 「 . . 」 6

. " .

6 8 .

16 17 .

< 1097 ,2014.9.24.>

< 1120 ,2015.1.6.>

< 1154 ,2015.4.2.>

1 () . , 3 1 5) 2015 7 1

2 () 3 1 5) 2015 7 1

3 () 「 」

, 가 2015 7 1 3 1 5)

4 1 . . 2015 6 30 3

1 2015 7 1 .

4 () 7 2

2)))

[별표 1] <개정 2014.8.20.>

품질관리기준 (제7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관리"란 화장품의 제조판매 시 필요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조업자 및 그 밖에 제조에 관계하는 업무(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화장품의 시장 출하에 관한 관리, 그 밖에 제품의 품질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나. "시장출하"란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타인에게 위탁 제조 또는 검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타인으로부터 수탁 제조 또는 검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판매를 위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관리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품질관리업무의 절차에 관한 문서 및 기록 등

가.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1) 적정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확보에 관한 절차
- 2)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및 품질 불량 등의 처리 절차
- 3) 회수처리 절차
- 4) 교육·훈련에 관한 절차
- 5)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절차
- 6)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 절차
- 7) 그 밖에 품질관리 업무에 필요한 절차

나.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제조한 것임을 확인하고 기록할 것
- 2) 제품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 3) 제조판매한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거나 품질이 불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기록할 것

- 4) 시장출하에 관하여 기록할 것
 - 5)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할 것. 다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제조업자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6) 그 밖에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다.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원본을 보관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원본과 대조를 마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4. 제조판매관리자의 업무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제조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가.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할 것
- 나. 품질관리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것
- 다.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 라. 품질관리 업무 시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문서로 연락하거나 지시할 것
- 마.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 및 제조업자의 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해당 제품의 제조일(수입의 경우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3년간 보관할 것

5. 회수처리

제조판매업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제조판매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회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회수한 화장품은 구분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 후 폐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 나. 회수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하고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6. 교육·훈련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에게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 및 교육·훈련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 가.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관할 것
- 나. 제조판매관리자 외의 사람이 교육·훈련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실시 상황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할 것

7. 문서 및 기록의 정리

제조판매업자는 문서·기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 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따라 해당 문서의 승인, 배포, 보관 등을 할 것
- 나.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에 그 날짜를 적고 개정 내용을 보관할 것

8.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제3호가목1)·4)·6), 나목1)·4)·5), 제4호마목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개정 2013.3.23>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7조 관련)

1. 용어의 정의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관리 정보"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그 밖에 적정 사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나. "안전확보 업무"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업무 중 정보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확보 조치"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2. 안전확보 업무에 관련된 조직 및 인원

제조판매업자는 안전확보 업무를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을 갖는 인원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안전관리 정보 수집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관리자에게 학회, 문헌, 그 밖의 연구보고 등에서 안전관리 정보를 수집·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확보 조치

제조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제조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제3호에 따라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를 신속히 검토·기록할 것

나. 제3호에 따라 수집한 안전관리 정보의 검토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수, 폐기, 판매정지 또는 첨부문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등 안전확보 조치를 할 것

다. 안전확보 조치계획을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그 사본을 보관할 것

5. 안전확보 조치의 실시

제조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제조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안전확보 조치계획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안전확보 조치를 결정하고 이를 기록·보관할 것

나. 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경우 문서로 지시하고 이를 보관할 것

다.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할 것

6. 제조판매관리자의 업무

제조판매업자는 다음의 업무를 제조판매관리자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확보 업무를 총괄할 것

나. 안전확보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여 기록·보관할 것

다. 안전확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 보관할 것

[별표 3] <개정 2014.9.24.>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제19조제3항 관련)

1.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가.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품류

-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 2) 영·유아용 로션, 크림
- 3) 영·유아용 오일
- 4)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 5) 영·유아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 1)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 2) 목욕용 소금류
- 3) 버블 배스(bubble baths)
- 4)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는 제외한다.

- 1) 폼 클렌저(foam cleanser)
- 2)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 3) 액체 비누(liquid soaps)
- 4) 외음부 세정제
- 5)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라. 눈 화장용 제품류

- 1)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2) 아이 라이너(eye liner)
- 3) 아이 섀도(eye shadow)
- 4) 마스크라(mascara)
- 5)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 6)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마. 방향용 제품류

- 1) 향수
- 2) 분말향
- 3) 향낭(香囊)
- 4) 콜롱(cologne)
- 5)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바. 두발 염색용 제품류

- 1) 헤어 틴트(hair tints)
- 2)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 3)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사. 색조 화장용 제품류

- 1) 불연지
- 2)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 3) 리퀴드(liquid) · 크림 · 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 4)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 5)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 6)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 7)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 8)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 9)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 1)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 2) 헤어 토닉(hair tonics)
- 3)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 4) 헤어 크림 · 로션
- 5) 헤어 오일
- 6) 포마드(pomade)
- 7) 헤어 스프레이 · 무스 · 왁스 · 젤
- 8) 샴푸, 린스
- 9)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 10)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자. 손발톱용 제품류

- 1)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 2)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나멜(nail enamel)
- 3) 탑코트(topcoats)
- 4) 네일 크림 · 로션 · 에센스
- 5) 네일폴리시 · 네일에나멜 리무버
- 6)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차. 면도용 제품류

- 1)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 2) 남성용 툴컴(talcum)
- 3)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 4)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 5) 셰이빙 폼(shaving foam)
-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카. 기초화장용 제품류

- 1)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 2) 마사지 크림
- 3) 에센스, 오일
- 4) 파우더
- 5) 바디 제품
- 6) 팩, 마스크
- 7) 눈 주위 제품
- 8) 로션, 크림
-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타. 체취 방지용 제품류

- 1) 데오도란트
- 2)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2. 사용 시의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1)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
 - 가)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 나) 적용 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 2)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말 것
-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사항
 - 가)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둘 것
 - 나)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말 것

나. 개별사항

- 1) 피부적용 제품류: 미세한 알갱이가 함유되어 있는 스크러브세안제

- (피부적용 제품류란 영·유아용 로션·크림 및 오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말한다)
- 가) 사용 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나)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 2) 팩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 3) 손발톱용 제품류
 손발톱 및 그 주위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 4) 두발용, 두발염색용 및 눈 화장용 제품류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5) 모발용 샴푸
 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나)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충분히 물로 씻어낼 것
- 6)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가) 피부에 묻으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두피·얼굴·목 등에 약액이 묻지 않도록 유의할 것. 특히 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얼굴 등에 약액이 묻었을 때에는 즉시 물로 씻어낼 것
 나) 특이체질인 사람 또는 두피·얼굴·목·손 등에 종기나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약액이 피부나 상처에 묻으면 심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그 외에 생리일 전후, 출산 전 및 출산 후, 병을 앓고 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사용을 피할 것
 다) 사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머리카락이 손상될 염려가 있으므로 용법·용량을 꼭 지켜야 하며, 가능하면 사전에 머리카락의 일부에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볼 것. 또한 사용을 마친 후에는 완전히 약액을 씻어낼 것
 라) 마개를 닫아 섭씨 15도 이하의 어두운 장소에 보존하고, 보존 중에 색이 변하거나 침전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
 마) 개봉한 제품은 7일 이내에 사용할 것. 다만, 에어로졸 제품이나 사용 중 공기유입이 차단되는 용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퍼머액의 경우 1회 사용으로 끝나지 않고 제1단계와 제2단계로 구별되면서 제2단계의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갈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충분히 고려할 것
- 7) 외음부 세정제

- 가) 외음부에만 사용할 것
- 나) 농축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농축액인 외음부 세정액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장기간 사용하지 말 것
- 라) 환부나 그 주위가 오염되어 있을 경우 주의할 것
- 마)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 바)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생아의 눈 등에 들어갈 우려가 있으므로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 사) 이 화장품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제품만 해당한다)
- 8)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요소제제의 핸드크림, 풋크림)
- 가) 눈, 코, 입 및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 나) 이 화장품은 프로필렌 글리콜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프로필렌 글리콜 함유 제품만 해당한다)
- 9) 체취 방지용 제품
- 가) 털을 제거한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 나) 제품을 바른 후 완전히 건조된 다음 의복을 착용할 것(에어로졸 제제는 제외한다)
- 10) 에어로졸 제품: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부스의 경우 나)부터 마)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사용 전에 흔들어 줄 것
- 나) 같은 부위에 연속해서 3초 이상 분사하지 말 것
- 다) 가능하면 인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사용할 것
- 라)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 것
- 마) 분사가스는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바)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1) 불꽃길이시험에 의한 화염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
- (가)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나)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 (다)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 (라)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2)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제품

- (가)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 (나) 난로, 풍로 등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다)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 (라) 섭씨 40도 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마)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할 것
 - (바)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 (사) 사용 후 남은 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 (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 11) 알파-하이드록시애시드(α -hydroxyacid, AHA)(이하 "AHA"라 한다)
 함유제품(0.5퍼센트 이하의 AHA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 제품은 제외한다)
 - 나)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은 부위에 발라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 다)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할 것(AHA 성분이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거나 산도가 3.5 미만인 제품만 해당한다)
- 12)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기재·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별표 4] <개정 2013.3.23>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제19조제6항 관련)

1. 화장품의 명칭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제조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을 포함한다.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주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주소를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같은 경우는 각각 하지 않고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로 한꺼번에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기재·표시하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5. 제조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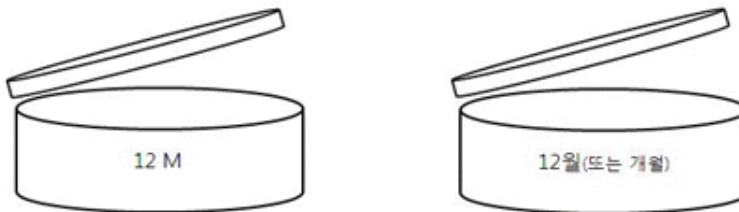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병행 표기하여야 하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제조연월일도 각각 구별이 가능하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예시: 심벌과 기간 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제품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제22조 관련)

1.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

- 가. 신문·방송 또는 잡지
- 나.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 라.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마.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2.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마. 불법적으로 외국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광고나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별표 6] 삭제 <2014.8.20.>

[별표 7] <개정 2015.4.2.>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이 표 제2호의 개별 기준 거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
- 마.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바.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다만, 광고와 관련된 업무정지는 제외한다.
- 사.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아.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판매금지"는 "수입대행금지"로, "판매업무정지"는 "수입대행업무정지"로 본다.
-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 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 2)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내용	관련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제조업자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전부가 없거나,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		제조업부정 지 6개월	제조업부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2)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가 없는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 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12개월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		경고	제조업부 정지 1개월	제조업부 정지 3개월	제조업부 정지 6개월
나)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 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부 정지 12개월
다.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 매업자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3 호	제조 또는 판매업부 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부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라.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 조업자가 법 제3조에 따 른 화장품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의 등록 및 변 경 사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4 호				
1) 제3조·제4조에 따 라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제조 또는 판매금지			
2) 제5조에 따라 다음 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업자·제조판 매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또 는 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의 변경		경고	제조 또는 판매업부 정지 15일	제조 또는 판매업부 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판매업부 정지 3개월

나)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다)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라)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경고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마) 제조 유형 변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 유형 변경	경고	판매업무정지 15일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사)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 유형 변경	수입대행업무정지 3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 6개월	수입대행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마.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1)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2)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5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업무정지 12개월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판매업무정지 12개월	
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법 제24조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 1 항 제 6 호				
1) 제11조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절차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나)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다) 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2) 제11조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안전관리 정보를 검토하지 않거나 안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나) 그 밖의 별표 2에 따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3) 그 밖에 제11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
사.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6호			
1) 제12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2) 제12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나) 작성된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2개월
3)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

<p>4)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지 1개월</p>	<p>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지 3개월</p>	<p>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지 6개월</p>	<p>제조 또는 해당 품목 제조업부정지 12개월</p>
<p>아.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을 수입하거나 국내에 반입한 경우</p>	<p>법 제24조 제1항제7호</p>	<p>제조 또는 판매업부정지 6개월</p>	<p>제조 또는 판매업부정지 12개월</p>	<p>등록취소</p>	
<p>자.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24조 제1항제8호</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12개월</p>	
<p>차.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24조 제1항제9호</p>				
<p>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의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12개월</p>	
<p>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격은 제외한다)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1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부정지 12개월</p>

<p>3)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가 격은 제외한다)의 일 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p>
<p>카.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 10조, 이 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 4에 따 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 반한 경우</p>	<p>법 제24조 제 1 항 제 9 호</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2개월</p>
<p>타.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 12조 및 이 규칙 제21 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 의 기재·표시상의 주 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24조 제 1 항 제 9 호</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p>
<p>파.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 매업자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 시·광고한 경우</p>	<p>법 제24조 제 1 항 제 10호</p>				
<p>1) 별표 5 제2호가목· 나목 및 카목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 지 3개월 (광고위반)</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 (광고위반)</p>	<p>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9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9개월 (광고위반)</p>	
<p>2) 별표 5 제2호다목부</p>		<p>해당 품목</p>	<p>해당 품목</p>	<p>해당 품목</p>	<p>해당 품목</p>

<p>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p>	<p>판매업무정지 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광고위반)</p>	<p>판매업무정지 4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광고위반)</p>	<p>판매업무정지 6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6개월 (광고위반)</p>	<p>판매업무정지 12개월 (표시위반)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2개월 (광고위반)</p>
<p>하.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경우</p>	<p>법 제24조 제1항 제10호</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2개월</p>
<p>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p>	<p>법 제24조 제1항 제11호</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 업무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p>
<p>1)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3개월</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9개월</p>	<p>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12개월</p>
<p>2)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p>	<p>제조 또는</p>	<p>제조 또는</p>	<p>등록취소</p>	
<p>3) 법 제8조제1항에 따</p>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4)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5)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7)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2개월
너. 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24조 제 1 항 제 12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12개월	등록취소	
더. 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검사	법 제24조 제 1 항 제 13호	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월	판매 또는 제조 업무 정지	등록취소	

명령·개수명령 또는 폐기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개월		
-------------------------------	--	------	--	--

[별표 8] 삭제 <2014.8.20.>

[별표 9]

수수료(제30조 관련)

종류	수수료	
	전자민원의 경우	방문·우편 등의 경우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 등록신청	27,000원	30,000원
2. 화장품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9,000원	10,000원
3.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의뢰	189,000원	210,000원
4.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51,000원	57,000원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25,000원	28,000원
5.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 신청	1,800원	2,000원
6. 등록사항 등의 외국어 증명 또는 확인 신청(1통) (2통 이상의 경우 추가 1통당)	14,000원 (4,000원)	16,000원 (5,000원)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9.24.>

화장품 제조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제주소	제조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조 유형			
제조판매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시설의 명세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 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 80g/㎡(저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9.24.>

(앞 쪽)

제 호

화장품 제조업 등록필증

1. 상호:
2. 소재지:
3. 성명:
4. 생년월일:
5. 제조 유형: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120g/㎡]

(뒤 쪽)

변경 및 처분 사항 등

년 월 일	내 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9.24.>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제조판매업소	제조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제조판매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제조판매 유형			
제조업 겸업 여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화장품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처리 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 80g/㎡(저출음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9.24.>

(앞 쪽)

제 호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 1. 상호:
- 2. 소재지:
- 3. 성명:
- 4. 생년월일:
- 5. 제조판매 유형: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OO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 120g/㎡]

(뒤 쪽)

제조판매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 및 처분 사항 등

년 월 일	내 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24.>

화장품 제조업 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제 소 소	제조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업 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내용

항목	현 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 사항	사유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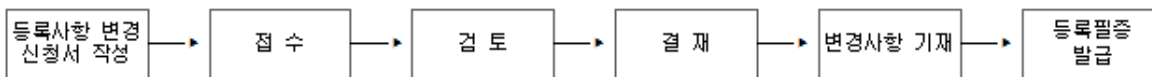
제출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 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제조업자의 변경 (법인인 경우 대 표자의 변경)	1. 제조업등록필증 2. 제조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제조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제조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제조업등록필증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1. 제조업등록필증 2. 시설의 명세서		
제조 유형 변경	1. 제조업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시설 명세서		

처리 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9. 24.>

화장품 제조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제조판매 업소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내용

항목	현 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사항	사유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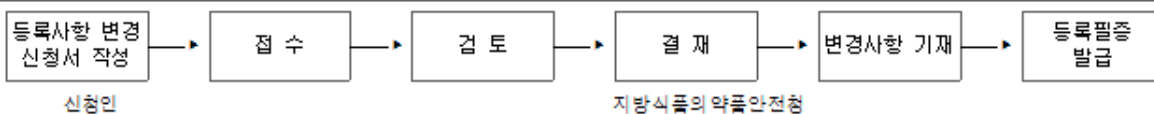
제출서류	뒤쪽 참조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 쪽)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수수료
제조판매업자의 변경(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2.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제조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변경(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변경)	제조판매업등록필증		
제조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	제조판매업등록필증		
제조판매관리자의 변경	변경할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판매 유형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2.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 절차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9>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 []제조 []수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제조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심사의뢰 품목

제품명	
원료 성분 및 배합 비율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소(원)	
비고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저출용급)]

(뒤쪽)

첨부서류	수수료
1. 기원(起原)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 투여 독성시험 자료 나 1차 피부 자극시험 자료 다 안점막 자극 또는 그 밖의 점막 자극시험 자료 라 피부 감작성시험 자료 마 광독성 및 광감작성 시험 자료 바 인체 침포시험 자료 3.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 자료 나 인체 적용시험 자료 4. 자외선 차단지수 및 자외선A 차단등급 설정의 근거자료(자외선을 차단 또는 선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의 경우만 해당함)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검체 포함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처리 절차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가. 원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변경, 효능·효과 변경(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 제외), 기준 및 시험방법(pH 및 메탄올 제외) 변경의 경우: 60일 나. 가목 외의 변경사항의 경우: 15일

제조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항목	심사받은 사항	변경심사 신청사항	사유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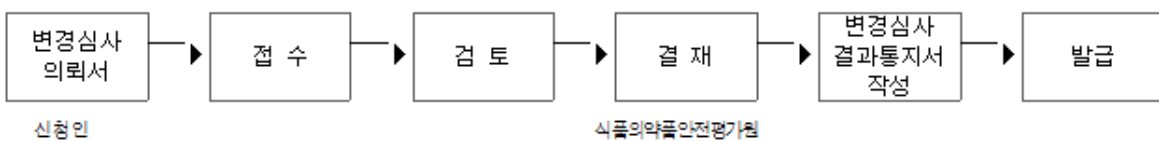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처리기간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1. 먼저 발급받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2.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처리 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저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3.29>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 호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변경심사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 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성명		생년월일	
심사항목	제품명		
	원료 성분 및 배합 비율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준 및 시험방법		
	제 조소(원)		
비고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직인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저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 []제조 []수입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조판매업자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조판매업 등록번호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소(원)	제조회사명	제조국
	소재지	

보 고 사 항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함량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농도)	
제품의 pH 기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능성화장품	고시한 기준 및 시험방법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규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호의 기능성화장품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제품명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번호
	이미 심사받은 품목의 심사결과 통지일
	보고 제품의 함량시험 기준치

「화장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폐업 신고서
 []화장품 제조판매업 []휴업
 []재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내용	폐업연월일		
	휴업 예정기간	휴업사유	
	재개연월일		

「화장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제조업등록필증 또는 제조판매업등록필증(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3.23>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수출
[]수입
[]반입**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품목	보통명(제품명)		학명
	수량(제품의 수량)		원산지
용도 (사용 계획)			

「화장품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수출하는 경우 가. 외국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국내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2. 수입하는 경우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나. 물품매도 활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3. 반입하는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입수 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 허가(증명)번호 Original Permit/Certificate NO R,O,K				
<input type="checkbox"/> 수출 EXPORT <input type="checkbox"/> 재수출 RE-EXPORT <input type="checkbox"/> 수입 IMPORT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		2. 유효기간 Valid-until				
3. 수탁자(성명, 주소, 국명) Consignee(Name and address, country)		4. 수허가자(성명, 주소, 국명) Permitee(Name and address, country)				
3a. 목적지 Country of destination						
5. 대한민국 관리당국 R,O,K MANAGEMENT AUTHORITY:						
5a. 사용 목적(뒤쪽 참조) Objective of the operation(See reverse)		6. 스탬프 번호 Security stamp No.				
7/8. 학명 및 보통명 Scientific Name (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9. 표본이 포함된 상품명 (수량) Name of commodity including part or derivative of specimens(Quantity)	10. 부속서 번호 및 출처(뒤면 참조) Appendix No. and source(see reverse)	11. 표본의 수량 또는 중량 Quantity, number of specimens and / or net weight(kg)	11a. 총수출쿼터량 Total exported Quota		
A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허가번호 Permit No.	날짜 Date	12a. 최종 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증명번호 Certificate No.	날짜 Date	12b. 사용 목적 및 취득일 No. of the operation★★ or date of acquisition★★★
B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허가번호 Permit No.	날짜 Date	12a. 최종 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증명번호 Certificate No.	날짜 Date	12b. 사용 목적 및 취득일 No. of the operation★★ or date of acquisition★★★
★ 야생 또는 인공사육종식국가(재수출의 경우) 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f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 ★★ 상업목적으로 야생 또는 인공사육 종식한 부록 I 에 한정함 Only for the specimens of Appendix I species bred in captivity of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 ★★★ 협약 이전의 표본 For pre-convention specimens						
13. 허가증(증명서) 발급기관 THE PERMIT IS ISSUED BY:						
_____	_____	_____	_____			
장소 Place	날짜 Date	서명 Signature	Official seal and title			
14. EXPORT ENDORSEMENT			15.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anding/Airway-Bill Number			
See block 7	Quantity					
A		수출항 Port of export	날짜 Date	서명 Signature	Official seal and title	
B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앞면 5a란에 사용될 코드

The codes to be used for box no. 5a are as follows:

- T 상업용 Commercial
- Z 동물원용 Zoos
- G 식물원용 Botanical gardens
- Q 서커스 및 순회공연(전시)용 Circuses and travelling exhibitions
- S 과학 연구용 Scientific
- H 수렵 기념품 Hunting trophies
- P 개인적 사용 Personal
- M 생물학적 연구용 Bio-medical research
- E 교육용 Educational
- N 야생용 Reintroduction or introduction into the wild
- B 인공사육 증식용 Breeding in captivity or artificial propagation

앞면 10란에 사용될 코드

The Codes to be used for box no. 10 are as follows:

- W 야생의 것 Specimens taken from the wild
- R 목장의 것 Specimens originating from a ranching operation
- D 상업 목적으로 인공사육한 부록 I 기재 표본으로서 CITES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출한 것
(부분품·완제품 포함)

Appendix I animals bred in captivity for commercial purposes, or Appendix I plants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 as well as parts and products thereof, expor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VII, paragraph 4, of the Convention.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제 호

화장품감시공무원증

사 진

3cm × 4cm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
영한 것)

성 명

소 속 기 관 명

55mm × 85mm [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화장품법」 제 18조제 4항
에 따라 화장품감시공무원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수 거 증

NO.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수 거 품 목 명 세

순 위	제 품 명	제 조 번 호	제 조 일 (또는 사용기한)	규 격	수 량	비 고
		 (. . .)			

「화장품법」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거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 (재결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2014.8.20.>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14.8.20.>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재발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 조업(제 조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 화번호	
	대표자	생 년월일	

신청 사유	
-------	--

「화장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등록필증 ·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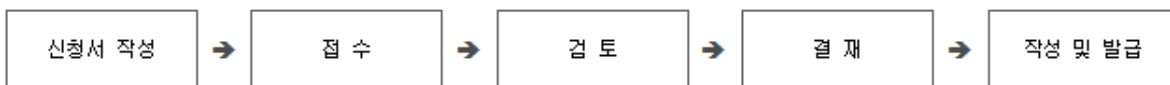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필증이 멸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필증 2. 등록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청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활용종)]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3.23>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제 조 판매업 등록번호	
	소재지	전 화 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심사결과 통지서 번호			
신청 사유			

「화장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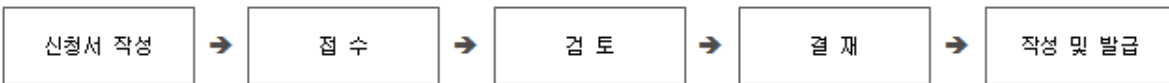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 화 번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가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서 2.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수수료
		제32조 관련 별표 9에서 정한 금액

처리 절차



신청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저활용종)]